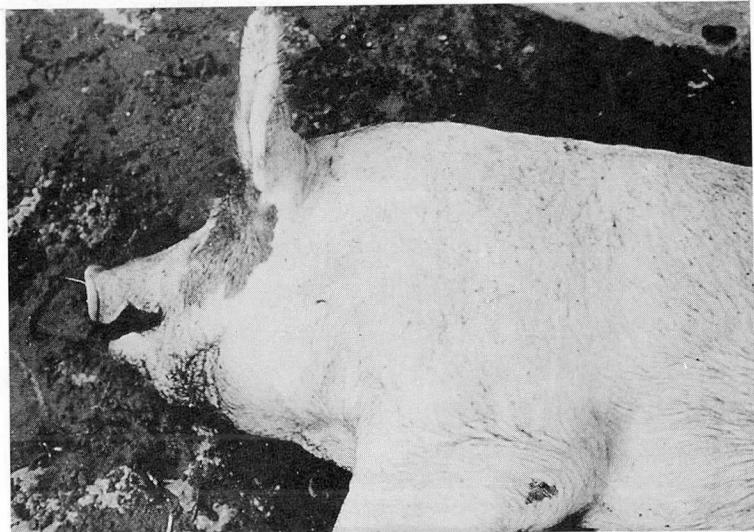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계획

◇…농림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 축산국에서 관계공무원과 축산관련단체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가축방역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 장단기 가축방역 종합대책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본고에서는 가축방역 종합대책에 양축농가와 관련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8월 23일 보고한 가축방역 종합대책 시안을 돼지질병 중심으로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주〉……………◇

—홍보부—



1. 현황

가.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법정전염병 지정, 환축신고, 소독명령, 검사·주사실시 명령, 이동제한, 살처분, 폐사체 및 오염물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및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에 따라 예방약 개발과 수출입 및 국가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방역

1) 급성가축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돼지콜레라와 돼지 일본뇌

염 등은 영세양축농가 위주로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다.

2) 혈청검사 사업 실시 :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 면역형성여부, 예방접종 실시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자율방역 : 돼지는 돼지콜레라 등 10종, 소는 유행열 등 6종, 닭은 뉴캐슬병 등 11종에 대해 국가방역대상 농가 이외(전·기업농)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가축혈청검사와 가축질병 예찰결과를 토대로 양축농가에 홍보와 교육을 실

시하고, 방역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2. 방역여건 변화

가. UR협상타결 및 WTO 출범

농산물 협정문 제6조 국내보호 감축 약속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 및 가축방역은 감축약속 면제로 규정하고 있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나. 가축 사육형태의 집단화·다두화

돼지의 경우 70년에 호당 평균 1.3두에서 80년 3.5두, 90년 34두, 93년 85두로 집단화·다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소와 돼지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북한 질병 발생 정보 미확보

휴전선 인근 지역의 야생동물과 야조에 의해 84년에 광견병 1두, 94년에 광견병이 19두 발생하는 등 질병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 질병은 휴전선 인근 지역 야생동물(너구리, 오소리)에 의해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동물 및 축산물 수입 허용지역 확대

UR SPS 협정문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세분화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대상지역 확대로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엔 현재 금수국가이나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길림성과 요령성 등 북부 지역에서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마. EC 등으로부터 수입제한 해제 요청

EC 12개국중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국가로부터 수입제한 해제 요청이 왔다. 요청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다.

3. 그간의 주요 추진 사항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현행 41종인 법정전염병을 69종으로 늘리고, 제1종 법정전염병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살처분, 폐사축 및 오염물 관리)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나.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 요령 고시

90년 12월29일 소 50종, 돼지 24종, 가금 20종, 기타 29종 등의 질병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임상검사, 혈액검사, 부검 등의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요령을 제정했다. 병성감정은 연구소, 시험소, 검역소, 방역관이 하도록 했다.

다. 종돈장, 종계장 위생관 리요령 고시

94년 12월 17일 우수한 종돈 및 종계를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돈장은 돼지콜레라 등 4종, 종계장은 뉴캣슬병 등 8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이며, 종돈의 입식, 출하시엔 질병검색을 실시한다.

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

94년 4월 18일에 혈청학적 양성돈은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해서 식용으로 허용하고, 임상형 양성돈은 살처분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경기 용인군 3,000두, 충남 홍성군이 2,000두를 대상으로 95년 5월까지 1년간 백신시험사업을 실시해서 시험결과에 따라 백신화대여부를 검토한다.

마.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정



94년 8월 6일 UR에 따른 해외 악성 전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해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을 정의하고, 발생지, 오염지역,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규정한 요령을 제정했다.

4. 향후대책

가. 단기대책

1) 관계법령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해 전염병 발생신고를 유도한다. 수입동물은 사전에 수입시기와 물량, 수입항을 정해서 검역을 강화한다.

○ 축산법 개정 : 축발기금을 현행 재해 및 외국으로부터의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등으로 인한 긴급방역에서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병류별 방역실시요령 제정 :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해서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한다. 94년 현재 4종을 95년에 30종으로 확대한다.

○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개정 : 가축위생연구소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연계를 규정해서 병성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2) 가축방역업무 제도개선

○ 가축위생연구소의 시험사업 : 국내 가축방역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농진청의 승

인을 받고 있는 것을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한다.

○ 동물용 예방약 국가검정제도 : 목적동물을 실험동물 또는 대체동물로 사용해서 검정기간을 단축하고, 원가절감 및 민원을 해소한다. 목적동물을 실험동물 또는 대체동물로 변경할 경우 검정기간을 40~60일에서 20~30일로 단축할 수 있다.

○ 기동방역반 상시 운용 : 가축위생연구소, 축협,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병성감정장비를 탑재한 가축진료 견진차 17대 확보, 운영한다.

3)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강화

○ 동물검역기능 강화 5개년 계획 추진 철저 : 검역기능강화

계획을 1년 앞당겨 92~95년에 완료한다. 주요내용은 동물검역 소 조직을 본소 5과 8개지소, 18개 출장소, 해외주재 검역관 3명으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169명에서 424명으로 늘린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타를 설치하고, 검역장비 및 시설을 현대화 한다.

○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예방약 비축 : UR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에 대비하여 구제역 예방약 40만두분, 우역 예방약 10만두분을 96년까지 비축한다.

4) 국가방역체제 강화

○ 가축질병 혈청검사 강화 :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 면역형성여부, 방역 실시시기 등을 판정하여 대양축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94년에 19종 47만7천건을 2000년대 30종 1백만건으로 확대한다.

○ 인수공통전염병, 외래악성 전염병은 국가방역으로 추진 : 광견병, 탄저, 기종저, 우결핵, 부루세라 등의 예방약 구입비,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에서 지원한다.

○ 가축질병예찰업무 활성화 : 가축질병의 발생, 발생동향을 분석하여 양축농가를 지도하고 홍보하여 방역철저를 기

한다. 이를 위해 예찰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협의회를 3개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일선방역요원에 대한 교육, 점검강화 : 검진업무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시 경찰관 입회, 순환근무제 실시, 정기 또는 수시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 종돈장 및 종계장 위생관리 강화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연구소, 시험소 합동으로 정밀검색사업을 실시한다.

○ 예방접종사업은 양축농가 자율방역으로 전환 : 국내 발생 전염병은 양축농가 자율방역으로 유도한다.

○ 양축가에 대한 홍보, 지도 강화 : 전염병 발생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하고, 병류별 방역용 비디오를 제작, 홍보를 강화한다. 축종별로 97년까지 30종의 예방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한다.

나. 장기대책

1) 방역조직 일원화 추진 :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를 1차관서로 규정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2차관서로 규정한다.

2)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요원 증원 : 현행 시험소당 2명인 방역요원을 5명으로 증원하도

록 내무부와 협의한다.

3) 가축방역 공제조합 운영

：축협 및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가축질병 발생 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공제조합을 운영한다.

4) 가축위생방역지도협회

(가칭) 설립 검토 : 가축방역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이 협회에서는 축산물 위생검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수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